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80

발의연월일: 2025. 2. 24.

발 의 자:남인순・민병덕・이병진

김 윤·김남희·백혜련

강훈식 • 한준호 • 서영석

박상혁 • 이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관련 조사 및 응급조치 등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므로,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1호의3, 제 6조제18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3.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6조에 제1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3. 제5조제21호의3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제4호에 규정된 아동학대범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
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	법경찰관리)
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	
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	
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	
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	
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21의2. (생 략)	1. ~ 21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1의3. 「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
	<u> 무원</u>
22. ~ 53. (생 략)	22. ~ 53.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18의2. (생 략) <u><신 설></u> 1. ~ 18의2. (현행과 같음)
18의3. 제5조제21호의3에 규정
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
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아동학대범죄
19. ~ 50. (현행과 같음)

19. ~ 50. (생략)